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06

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:이원욱・김두관・신정훈

이수진비・김민철・박영순

김승남 • 윤준병 • 김윤덕

전용기 · 김남국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

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,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)와 관련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지정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, 주택의 건설 및 공급, 주택 관련 세제(稅制)에 관한 사항을 소 관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4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).

##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사항, 주택 관련 세제(稅制)에 관한 사항 또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1. 다음 각 목의 지역 또는 지구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의원
  - 가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지역
  - 나. 「주택법」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
  - 다.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
- 2.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
- ⑨ 의장은 위원 선임 후에 제7항 또는 제8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개선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<u><신 설></u>

⑨ 의장은 위원 선임 후에 제7
항 또는 제8항의 사유가 발생
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개선하여야 한다.